2019년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6. 11.(화요일), 11:00

o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00건(안건번호 제2019-47048호~48419호)
 - 회의결과: 해외 드라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시물 12건(안건번호 제2019-47048호~47049호), 무단 번역한 일본 만화 게시물 7건(안건번호 제2019-47050호) 및 네이버 밴드에서 복수의 소설 텍스트파일을 제공하는 게시물 232건(제2019-47051호~47266호)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49건 중 이미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87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B 위원 : 동의하며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A 위원 : 이견 없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47048호~4841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000건임 (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먼저 안건번호 제 2019-47048호~47049호는 실명의 민원인 신고를 토대로 보호원이 해당 블로그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우리말 자막이 있는 해외 유명 드라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물 시즌 7(총 7부작)과 시즌8(총 6부작)의 전체 분량을 게시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47048호~4704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드라마의 국내 방영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케이블 채널 '스크린'에서 국내 독점 방영되었음
- B 위원: 게시자는 드라마 시즌 7과 시즌 8의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에 우리말 자막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47048호~47049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

에게 안건번호 제2019-470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4705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무단 번역한 일본 만화를 제공한 사안임 게시자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일본만화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47050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47051호~47266호는 소설 공유 밴드를 통해 다수의 출판물이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47051호~47219호 게시물이 제공되고 있는 밴드들은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하고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19-47220호~47266호 게시물이 제공되고 있는 밴드는 회원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음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47220호~47266호 게시물이 제공되고 있는

밴드와 같이 비교적 폐쇄적인 밴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의 조사 담당 부서에서 해당 밴드에 가입하여 확인하고 있음 보호원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
- A 위원 : 다수의 소설을 불법 전송한 것이 입증된 사안으로 시정권고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 이견 없이 밴드에서 다수의 소설을 전송한 사안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47050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47267호~4841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47267호~4841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 저작물을 데드카피한 것으로서 시정조치 가결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됨

- A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심의시점 현재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7267 호~4841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7048호~제2019-48419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25.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